

[별표 2]

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 (제9조 관련)

1. 목적 및 적용 범위

- 가. 이 기준은 「도서관법」 및 「도서관법 시행령」에 따라 소장자료의 제적 및 폐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.
- 나. 제적·폐기 자료의 범위는 「도서관법 시행령」[별표 7]에 따른다.

2. 일반적 기준

- 가. 물리적 손상이 심각한 오손·훼손·파손 자료
 - 1) 자료의 물리적 손상이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
 - 2) 자료의 물리적 손상으로 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
 - 3) 대출 중 물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
 - 4) 자료 보수가 어렵거나 보수 비용이 구입 비용보다 많은 자료
- 나. 이용에 필요한 부수 외의 복본이나 내용이 중복되는 자료
- 다.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
 - 1) 사회 및 환경의 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
 - 2)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
 - 3)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
 - 4) 저자 또는 발행처 등의 요청에 따라 교체된 자료
 - 5) 전집·총서·다권본 등에서 일부가 빠진 불완전본은 모든 권이 갖춰진 완전본을 확보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.
- 라.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
 - 1) 신문의 축쇄판, 백서의 시판본, 잡지의 영인본 등
 - 2)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 판이 나온 경우
 - 3)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
 - 4) 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
- 마. 재해·사고 등 불가항력으로 유실된 자료
- 바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

3. 연속간행물

- 가. 복본 및 중복자료
- 나. 열람용 신착자료로 활용된 과년도 연속간행물(잡지 1년, 신문 1개월)
- 다. 발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연속간행물

4. 비도서자료

- 가. 복본 및 중복자료
- 나. 많은 이용으로 상태가 마모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자료
- 다. 보관 또는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
- 라. 최신자료로 갱신된 이전 자료

5. 손실자료(소재불명자료) 또는 미회수자료(장기연체자료)

- 가.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되지 않는 자료
- 나. 반납 연체에 따른 독촉 조치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장기연체자료
(360일 이상 연체)
- 다. 회원의 해외 이주 또는 거주지 소재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출자료
- 라.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분실·훼손자료 중 절판 등의 사유로 재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및 변상 처리된 자료